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60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박정현 · 양부남 · 이광희
염태영 · 김기표 · 위성곤
김현정 · 복기왕 · 송재봉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등 지원을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 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 467명으로 약 10배 증가했고, 본 특례로 환급된 부가가치세 건수만 77만 8148건으로,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 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 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u>2025년 12월 3</u> <u>1일까지</u> 공급받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 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 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 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 ----- ----- ----- ----- ----- ----- ----- <u>2028년 12월 31</u> <u>일</u>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